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3.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1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17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2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식품 접객업) 영업장 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2)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안을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정옥)

가.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현행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안을 마련함.

다. 본 개정안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이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부과되어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비용을 느끼지 못해 배출량 감소에 한계가 있었으며, 2013년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처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012년 10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83%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종량제 전국시행에 대해서는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라. 본 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 지침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수료 부과기준 또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주민부담률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9 호
----------	---------

제출연월일 : 2013.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규정에 더불어 배출자 부담원칙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세분화 및 인상안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낭비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조례반영(안 제2조 제3항)

- 다량배출사업장(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 변경
(현행) 12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제곱미터 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별표2)

- 종량제 시행방법(부피형,무게형)에 따른 수수료액을 세분화 및 상향 조정

구 분	수 수 료						
	1 l	2 l	3 l	5 l	10 l	20 l	100 l
부 피 형	61원	122원	183원	305원	610원	1,220원	6,100원
	kg당 76원						
음식업소,상가	kg당 114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다. 수수료 조정안 시행시기 : 2013년 6월 1일(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24~2.13,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125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부피형 종량제	1ℓ	61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판매수수료 : 수수료(가격)에 포함
	2ℓ	122원			
	3ℓ	183원			
	5ℓ	305원			
	10ℓ	610원			
	20ℓ	1,220원			
	100ℓ	6,1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6원			※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시기에 는 20ℓ, 100ℓ의 부피 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 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14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u>125제곱미터</u>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 ----- <u>200제</u> <u>곱미터</u> ----- ----- ----- ----- ----- ----- ----- ----- -----</p> <p>4.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분	수수료	비고	구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고
1.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세대당 월1,500원		부피형 종량제	1ℓ	61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량배출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판매수수료 : 수수료(가 격)에 포함
2. 위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와 5인 이상인 세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세대별 월1,500원			2ℓ	122원			
				3ℓ	183원			
①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	세대별 월1,000원			5ℓ	305원			
				10ℓ	610원			
				20ℓ	1,220원			
②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5인 이상인 세대	세대별 월1,800원		100ℓ	6,1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6원		※ 감량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에는 20ℓ, 100ℓ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3. 음식업소	kg당 114원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14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